

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을 위한
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7(목), 평창군수
- 회부일자 : 2012. 6. 22(금)
- 상정일자 : 2011. 6. 22(금) 제186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「산지관리법」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·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추가 해제(준보전산지 : 관리지역) 및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오대산국립공원 일부해제, 「수도법」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보전·생산·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5.839km²
(관리지역 세분 4.950km², 농림지역 0.889km²)
 - 자연공원법에 의한 오대산국립공원 일부 해제 : 2.279km²
 - 사유지로서 대지, 전, 답 및 준보전산지 지역 : 1.974km²
 -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: 0.305km²

- 수도법에 의한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: 1.737km²
 - 사유지로서 대지, 전, 답 및 준보전산지 지역 : 1.153km²
 -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: 0.584km²
- 상수원보호구역 1km 내외의 집수구역 : 0.575km²
-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 : 1.248km²

4. 검토결과

- 금회 변경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·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추가 해제된 지역(준보전산지 : 관리지역) 과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오대산국립공원 일부해제, 「수도법」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보전·생산·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
- 다만, 군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기 바람.